



# 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

## 1. 깨끗한 전파이용환경 조성

-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
- 전파감시(Radio Spectrum Monitoring)
- 불법무선국 조사·단속
- 전파교란 대응 및 전파혼신 처리
- 국내·외 위성전파감시 및 국내 위성망 보호

## 2. 신속·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

- 무선국 허가·검사
- 방송국 검사
- 통신사업자 등록·신고
- 정보통신방송 분야 비영리법인 허가
-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
- 전파차단장치 제조·수입 등 인가 및 사용신고

## 3.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

-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·단속
- 불법감청설비 조사·단속
- 전기통신설비 제공 감독
-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
- 방송편성비율 확인
-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기준 준수 관리

## 4. 전파 이용 촉진

-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
- 전파혼신 조사
- TV 수신환경 조사
- 전파환경 측정 서비스
- 위성 전파환경 조사

## 5. 국제 교류 협력

- 인접국간 전파관리 협력
- 국제 표준화 활동
- 전파관리 분야 국제교류
-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

## 6. 기술 교류 및 연구 지원

- 전파통신 기술 지원
- 위성전파 측정 정보 제공

#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!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.

지켜줄게!



## 중앙전파관리소

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,  
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.  
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 
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 
안전한 방송통신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
인터넷 전자민원 : [emsit.go.kr](http://emsit.go.kr)

민원상담 : **080-700-0074**  
**02-3400-2000**



기관명	주소	전화번호
중앙전파관리소	(05830)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34	02-3400-2000
위성전파감시센터	(17413)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	031-644-5900
서울전파관리소	(08249)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 (11604)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152	02-2680-1700 031-849-5800
부산전파관리소	(46703)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	051-974-5100
광주전파관리소	(58214)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	061-330-6800
강릉전파관리소	(25428)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	033-660-2980
대전전파관리소	(35283) 대전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(31754)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	042-520-4100 041-360-2800
대구전파관리소	(42043) 대구 수성구 동원로 90	053-749-2800
전주전파관리소	(55316)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	063-260-0070
제주전파관리소	(63037)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	064-740-2800
청주전파관리소	(28567)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	043-261-5811
울산전파관리소	(45013)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	052-231-8810

대한민국 전파 · 방송통신의 중심 중앙전파관리소

# 간이무선국 허가·신고 안내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 
중앙전파관리소

# 간이무선국에 대해 알아보까요?

간이무선국은 크게 휴대용과 고정용으로 구분됩니다.

## 휴대용 간이무선국

**개념** : 휴대용 간이무선국이란, 간단한 업무 연락용으로 휴대하여 들고 다니며 통신을 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입니다.

**무선국 검사** : 휴대용 간이무선국은 개설신고 시 무선국 준공 및 정기 검사가 면제됩니다.

## 고정용 간이무선국

**개념** : 고정용 간이무선국이란, 간단한 업무 연락용으로서 휴대는 하지 않고, 일정한 곳에 고정하여 사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이며,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, 차량용 등이 있습니다.

**무선국 검사** : 고정용 간이무선국은 개설허가 시 무선국 준공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# 간이무선국의 개설 등 안내

## 간이무선국의 개설 및 유효기간

**휴대용** : 휴대용 간이무선국은 개설신고의 대상으로,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며 별도 갱신(재허가)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**고정용** : 고정용 간이무선국은 개설허가의 대상으로, 유효기간은 5년이며,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, 재허가 기간 중에 허가갱신(재허가)을 하여야 합니다.

※ (참고) 허가 대상 무선국은 면허세 부과 대상으로 연 1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

# 간이무선국 재허가, 전파사용료 안내

## 간이무선국 재허가

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전자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간편합니다.

만약 재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, 무선국을 운용할 수 없으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- 대상 : 휴대용을 제외한 고정용 간이무선국
- 허가 유효기간 : 5년
- 만료일 : 6월 30일
- 신청기간 : 만료일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 (3.1.~4.30.)

※ (참고) 만료일 지정은 허가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6월 30일에 종료되도록 시행

## 전파사용료

휴대용 및 고정용 간이무선국은 1국당 분기별 3천원의 전파 사용료가 부과되며, 일시납(1년 : 4분기)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※ (유의) 전파사용료 체납 시 가산금 발생 및 행정처분 (허가·신고 취소)의 대상이 될 수 있음

## 휴지 및 폐지

**휴지** :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지 신청을 할 수 있고, 1회 신청 시 최대 1년 휴지가 가능하며, 휴지 신청이 없으면, 사용료는 계속 부과됩니다.

**폐지** :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※ (유의) 아날로그의 경우, 무선국 폐지 시 디지털 전환정책에 따라 재신청 불가

# 기타 유의사항 안내

## 디지털 전환정책

'19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간이무선국의 신규 개설 신고 및 허가가 제한됩니다.

※ (참고) 기존 신고·허가된 아날로그 간이무선국에 대해서는 기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이 허용되며, 허가 갱신(재허가) 및 지위승계 또한 가능

## 부관사항

부관사항이란, 법령에서 정한 사항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까지 규율하고 있으므로, 부관에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여 무선국을 운용하여야 합니다.

##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해외구매 무선설비

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1대만 반입하는 경우 등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 기술기준에 부합해야 허가 및 신고 후 운용이 가능합니다.

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해외구매 무선설비는 국내 기술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관련 기술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
간이무선국 허가·신고 상담 및 신청

☎ 080-700-0074(무료)

